

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즉시
------	-----	-----	---------

소유자	성명(명칭)		
	주민(법인)등록번호		전화번호
	주소		

자동차등록번호	차대번호
---------	------

말소등록의 원 인	<input type="checkbox"/> 폐차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작·판매자에게 반품 <input type="checkbox"/> 행정처분이행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예정 <input type="checkbox"/> 도난
	<input type="checkbox"/> 천재지변·교통사고·화재·폭파·매몰 등의 사고 <input type="checkbox"/>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량 초과
	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·시험 사용 목적 <input type="checkbox"/>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 사용 목적
	<input type="checkbox"/> 섬지역에서의 해체 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
	<input type="checkbox"/>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 목적 <input type="checkbox"/>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
	<input type="checkbox"/> 시·도지사가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

말소사실 증명서	<input type="checkbox"/> 발급 필요 <input type="checkbox"/> 발급 불필요
-------------	--

『자동차관리법』 제13조제1항, 『자동차등록령』 제31조제1항 및 『자동차등록규칙』 제37조에 따라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주소:

신청인 성명:

(서명 또는 인)

주민등록번호:

군 산 시 장 귀하

증 결 민 원	과태료	
	결재	

첨부서류	뒤쪽참조	수수료	1,000원
------	------	-----	--------

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

※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즉시
소유자	성명(명칭)		주민(법인)등록번호	
	전자우편주소	전화번호		휴대전화번호
	주소		법정동 코드	
자동차	등록번호		색상	
	(구)등록번호 <small>(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small>		전화번호	
	사용본거지		법정동 코드	
	용도	비사업용 () 관용 () 개인용 () 법인·단체용 운수사업용 () 개인택시 () 영업용(개인택시 제외)		
비과세 코드		부관	부관 종료일	

『자동차관리법』 제8조 『자동차등록령』 제18조 및 『자동차등록규칙』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주소:

즉결민원	과태료	
	결재	

신청인 성명: (서명 또는 인)

주민등록번호:

군 산 시 장 귀 하

위 임 장

상기 신청인에게 차량()의 신규등록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.

위임하는 사람 주 소 인) 인감도장날인

성 명

주민등록번호

붙임: 인감증명서 1부.

(별지 제1호서식) (개정 2010.8.4)

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자	처리기간 즉시 (항공기의 경우 7일)				
설정대상	<input type="checkbox"/> 자동차 <input type="checkbox"/> 건설기계 <input type="checkbox"/> 항공기 <input type="checkbox"/> 소형선박						
	등록번호(등록기호)						
저당권자	성명(명칭)						
	주소						
채무자	성명(명칭)						
	주소						
저당권 설정자	성명(명칭)						
	주소						
설정금액	<input type="checkbox"/> 채권액 <input type="checkbox"/> 채권최고액 <input type="checkbox"/> 담보가액 <input type="checkbox"/> 변제기						
이 자	원	이자 발생 시기	이자 지급 시기				
등 록 원 인							
대 위 원 인							
조건 또는 약정							
중전 저당권 등록 사실							
『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』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.							
년 월 일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px; height: 40px;"> <tr> <td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upright;">즉결민원</td> <td>과태료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결재</td> </tr> </table>	즉결민원	과태료		결재	신청인 :		(서명 또는 인)
즉결민원	과태료						
	결재						
군 산 시 장 귀 하							
첨부서류	1.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(건설기계·소형선박·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 2.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(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3.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『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』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		수수료 『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』 제10조에서 정한 금액				

저당권 설정계약서

저당권자(채권자)

성명: (인)

주민등록번호:

주소:

채무자

성명: (인)

주민등록번호:

주소:

저당설정권자(소유자)

성명: (인)

주민등록번호:

주소:

채권액 일금 원 채권한도 금액내에서 상기 채무자겸 저당설정권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권자겸 저당권자에게 아래의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을 설정한다.

【저당설정 차량 내역】

차량번호	차대번호	차 명	사용본거지

현물출자 위·수탁 (기재/해지) 동의서 및 위임장

년 월 일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와
 위·수탁차주 의 위·수탁계약을 년 월 일자로
 (체결 / 해지)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자동차등록번호	차대번호	차 명	적재량	차량연식

년 월 일

운송 사업자 : (인)
 법 인 번 호 :
 전 화 번 호 :

위·수탁차주 : (인)
 주 민 번 호 :
 전 화 번 호 :

수 임 자 : (인)
 주 민 번 호 :
 전 화 번 호 :

※ 붙임 : 인감증명서 각 1부 (발행일부터 3개월이내)

미성년자 자동차 양도 동의서

자동차양도자

성 명 :

주민 등록 번호 :

주 소 :

양도자동차번호 :

상기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자동차 양도를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법정대리인

성 명 : (인감날인) 관계 :

주민등록번호 :

주 소 :

붙임 1. 인감증명서1부

2.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(법정대리인 확인서류). 끝.

공동 명의 신청서

대상 차량

- 차량등록번호:
- 차 대 번 호 :

상기 차량을 아래와 같이 공동명의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자

대표자

- 성명: (인)
- 주소:
- 주민등록번호:
- 지분비율: %

공동명의자

- 성명: (인)
- 주소:
- 주민등록번호:
- 지분비율: %

첨부: 대표자, 공동명의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

군산시장 귀하

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11.10.31> 민원24(www.minwon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자동차등록원부 등본(초본) 발급·열람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즉시
신청인	성명(명칭) (서명 또는 인)		주민등록번호
	주소 :		
발급·열람 대상 자동차	등록번호(또는 차대번호)		
	사용본거지 :		
소유자	성 명(명칭) :	주민(법인)등록번호	
신청내용	발급 수량	갑부 []부	을부 []부
	열람 부분	갑부 []	을부 []
용도			
<p>「자동차관리법」 제7조제4항 및 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10조제1항·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font-size: 1.2em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font-size: 1.2em; font-weight: bold;">군 산 시 장 귀 하</p>			
첨부서류	없 음	발급 수수료	열람 수수료
		1건당 300원. 다만,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.	1건당 100원. 다만,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.
유 의 사 항			
<p>1. 자동차등록원부 등본(초본)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합니다. 다만,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아도 되며,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(초본) 발급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7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.</p> <p>2. 자동차등록원부는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,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7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가립니다.</p> <p>3.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.</p>			